

1. 개정이유

역세권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9682호, 2023. 6. 16. 공포·시행)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받던 것을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본문과 단서 조문이 변경(법 제14조)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허가 사항이 법 제14조제2항의 단서에서 본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조문에서 “단서”를 삭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2항의 단서”를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u>법 제14조제2항의 단서</u> 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① <u>법 제14조제2항</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